의안번호	제 208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9월 일 (제 303 회)

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

발 의 자	장병학 교육의원
발의연월일	2011년 9월 9일

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

의 안 번 호	208

(장병학 교육의원 대표발의)

발의연월일 : 2011년 9월 9일

발 의 자 : 장병학, 최미애, 박상필, 이광희, 전응천, 최진섭, 하재성의원(7인)

1. 제정이유

학교의 독서교육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능력 향상과 풍부한 정서 함양 및 건전한 독서교육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독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·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(안 제3조)

나.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“위원회의 설치” (안 제4조)

다. 독서교육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독서활동지도 (안 제5조부터 6조까지)

라.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나 교직원에게 연구비 지원 및 위원회 출석수당 지급(안 제7조)

마. 독서행사 실시 및 독서지도 유공자 표창(안 제8조)

바. 공공도서관과의 협력(안 제 9조)

사. 학교도서관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입비 지원,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　　의 :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

라. 기　　타

(1) 입법예고(2011. 8. 9. ~ 8. 29.) 결과, 특이사항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　　호

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독서문화진흥법」제10조,「학교도서관진흥법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, 독서교육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학교 독서교육"이란 학생들에게 행하여지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활동을 통해 독서태도, 지식, 기술, 흥미, 습관 등의 형성과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교육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.

2. "학교"란 「유아교육법」의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
3. "학교도서관"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·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)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독서교육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거나 학교

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.

② 독서교육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독서교육 전담부서) 교육감은 독서교육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.

제6조(독서활동지도)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에 따라 독서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.

제7조(연구비지원 등) ① 교육감은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나 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「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독서 행사)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학교 독서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 행사를 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 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지도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서 행사, 포상·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(공공도서관과의 협력)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 협력할 수 있다.

제10조(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)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과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행정상·재정상의 조치)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·재정의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 발 췌

◎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(학교의 독서 진흥)

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,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1.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학교 도서관의 신설·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3.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
4.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·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

③ **학교의 장은**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, 학교 도서관의 설치·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.

④ **학교의 장**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⑤ **학교의 장**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 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.

◎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(독서교육 등)

① **교육과학기술부장관·교육감과 학교의 장은**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**세부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** <개정 2008.2.29>

② 제1항에 따른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.

◎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9조(독서교육 등)

제9조(독서교육 등) **교육과학기술부장관·교육감과 학교의 장은**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**세부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**

1.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 상황
2. 학생들의 독서수준
3. 그 밖에 학생들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